

화학사고 자율대응체계 운영

2018. 3. 29 (목)



한강유역환경청

목차

- I - 추진 배경
- II - 화학사고 자율대응체계 추진 내용
- III - 화학안전 정책방향 : 자율관리체계 운영
- IV - 화학안전 선진화 길잡이
- V - 자진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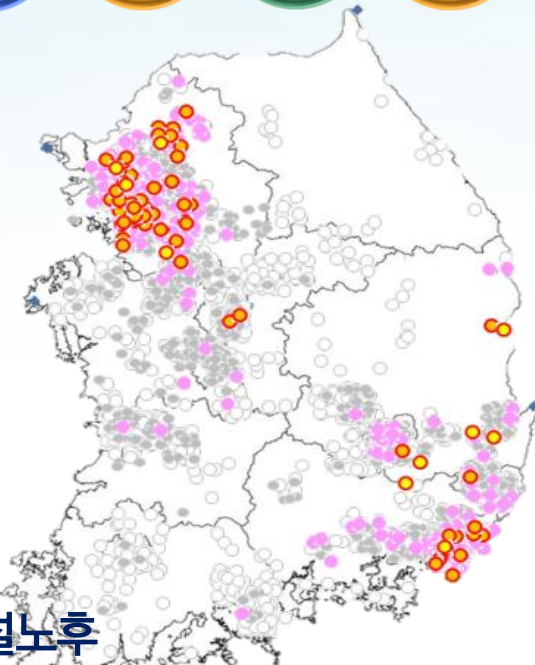
[I . 추진 배경]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밀집

3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 관리 취약
취급시설 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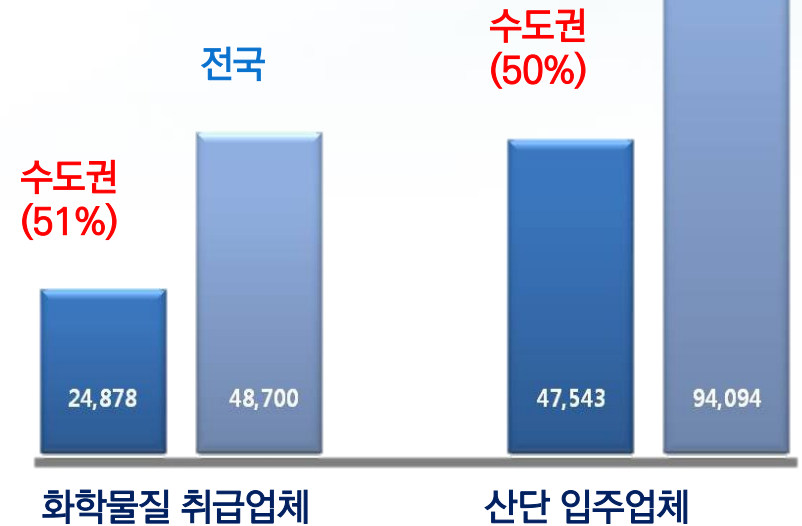


중·소규모, 시설노후
('13년 전수조사 결과)

안전사고각지대 발생 우려

전국 대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1%
산단 입주업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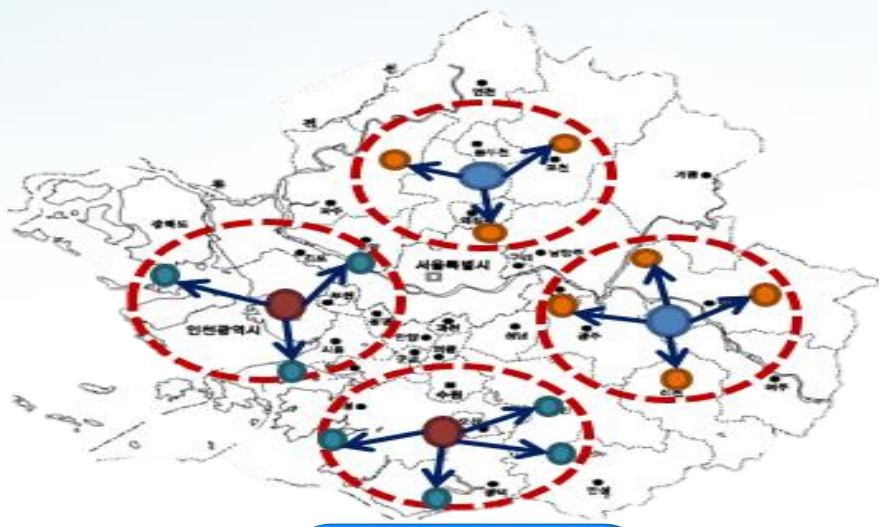


[II. 화학사고 자율대응체계 추진내용]

01 자율대응반 구성 운영

인천 · 시화 · 반월 38개반 641개 업체 참여

- 광범위한 수도권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소 화학안전공동체’는 권역별로 운영,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단지역은 블록별로 “자율대응반”을 구성·운영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사업장을 순회하며 시설 점검하고 노하우 공유
-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업체가 소속한 자율대응반 반원들이 신속하게 공동대응활동 전개



화학안전공동체



자율대응반

01 자율대응반 공동 대응 사례

자율대응반 환경관리인 사고 현장 출동

인명·환경피해 없이 화학사고를 조기에 수습

- 인천 부평동 소재 업체 질산 누출사고 ('17.11.30)
- 사고 인근 지역 (주)GM대우, (주) 풍산 등 사고수습지원
 - 소석회 살포 및 중화 폐기물 처리지원
 - 인근지역 반별 방재용품 지원 등



02 『화학사고 안심컨설팅』 실시

유사한 시설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

- 학계 교수, 관련업계, 공공분야 등 화학물질 전문가 24명으로 구성
- 관계 전문가에 의한 시설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무상 제공
- 기술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최종 의견은 책임자 또는 경영자에게 전달하여 개선 유도



화학사고 발생 업체



시설 노후 업체



화학물질 다량 취급업체

02 화학사고 안심컨설팅 사례

(주)단석산업

배 경

바이오디젤 정제시설 폭발 및 대형화재 발생('16.12.22)

주요내용

취급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강화 대책 컨설팅('17.2.28)

- 유해화학물질 물질표시 강화
- 배관 등 공정 시설 안전 점검
- 유해화학물질 하역 장소 유출방지대책 수립
- 노후시설 교체 및 보호구 착용 훈련 권고 등

개선사항

노후시설 교체



취급물질 표시



세척설비 설치



화학물질 표시



03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마련 · 운영('17.8월)

포인트 제도

◆ 평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정량화(포인트)하여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시 감경처분 등 인센티브 제공

- 시설개선 환경관리인력 채용, 안전교육, 사고 시 공동대응 등 10 안전과제를 선정
- 실적을 포인트화 하여 우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 표창 · 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평시 예방활동 → 포인트 부여

- ① 전담부서 설치 ② 취급시설 개선 투자
- ③ 환경관리 인력 채용 ④ 합동훈련
- ⑤ 화학사고 공동대응 등 <10대 안전과제> 선정

2.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예방활동별 차등 점수화
(예 :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 5점, 취급시설 개선 투자 5~15점 등)



3. 감경대상 위반행위(화관법)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위반
* 화학사고 발생, 고의위반 등은 감경 제외

5. 감경처리 절차

위반행위 적발 → 처분 사전통지
→ 화학안전포인트 실적제출
→ 검토 · 확인

4. 최대 50% 감경

- ① 과징금 ② 과태료
- ③ 행정처분(영업정지)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분 야	세부과제	포인트			
전문조직	① 환경관리 전담부서 (팀)설치 * 10인 미만 업체는 2인 이상 팀 구성 시 인정 * 그 외 업체는 회사 정규조직 구성 시 인정	5점			
시설개선	② 화학물질 취급관련 시설개선 투자비용 <규모별 세부기준> * 소 : 10인 미만 or 취급량 1천톤 미만 * 중 : 10인~500명 or 취급량 1천톤~10만톤 미만 * 대 : 500명 이상 or 취급량 10만톤 이상 » 종사자 수 또는 취급량 기준 중 최대 적용 기준으로 산정	규모별			점수
		소	중	대	
		5백만~5천만	5백만~1억	1천만~1억	5점
		5천만~1억	1억~1.5억	1억~2억	10점
		1억초과	1.5억 초과	2억 초과	15점
전문인력	③ 환경관리인력 신규 채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종사자수, 취급량) <u>초과 채용비율로 산정</u>	기준초과 채용비율	50% 미만	100% 미만	100% 이상
		점수	2점	5점	10점
		비고	최대 10점 인정		
		기준초과 채용비율	50% 미만	100% 미만	100% 이상
		점수	2점	5점	10점
		비고	최대 10점 인정		
	④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추가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종사자수, 취급량) <u>초과 선임비율로 산정</u>	기준초과 채용비율	50% 미만	100% 미만	100% 이상
		점수	2점	5점	10점
		비고	최대 10점 인정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분 야	세부과제	포인트												
안전교육	⑤ 대표자 협의회 참여	10점 이내												
	⑥ 워크숍, 맞춤형 안전교육 등 참여 <규모별 세부기준> * 소 : 10인 미만 or 취급량 1천톤 미만 * 중 : 10인~500명 or 취급량 1천톤~10만톤 미만 * 대 : 500명 이상 or 취급량 10만톤 이상 » 종사자 수 또는 취급량 기준 중 최대 적용 기준으로 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th> <th>중</th> <th>대</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점/명</td> <td>1.5점/명</td> <td>1점/명</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3">최대 20점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소	중	대	점수	2점/명	1.5점/명	1점/명	비고	최대 20점 인정		
	구분	소	중	대										
	점수	2점/명	1.5점/명	1점/명										
비고	최대 20점 인정													
사고예방	⑦ 대중소기업 협의회, 자율대응반 참여/활동	10점 이내												
사고대응	⑧ 화학물질 사고대응 합동훈련	(주관)5점/회, (참여)2점/회												
기 타	⑩ 기타 예방·대응 안전관리 노력	2~10점(2점/건)												

구성 및 운영

민간 자율참여 방식의 협의체로 경영자(대표자)와 환경기술인(자율대응반)간 소통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한 인식 공유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시설 보완 유도

화학물질 정책공유

- 환경법령 개정방향
- 포럼,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구축

- 자율대응반 지원(훈련 등)
- 환경안전 캠페인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 안전 노하우 공유
- 노후시설 개선 투자

참여업체 혜택

-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 안심컨설팅 우선 지원



[Ⅲ. 그간의 업무 추진]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자율안전관리 활동으로 화학사고 발생 감소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간 **민간 자율점검·정비, 상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선제적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자율대응반 우수활동 확산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대응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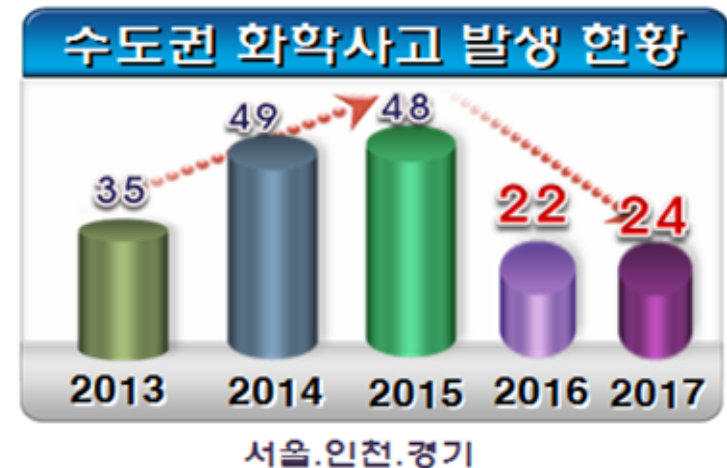
환경부



환경부

연도별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화학 사고(건)	49 ⇨ 48 ⇨ 22 ⇨ 24			
인명피해(사망부상)	2/111 ⇨ 2/38 ⇨ 0/26 ⇨ 0/11			





[IV. 화학안전 선진화 길잡이]

화학안전 선진화 길잡이

1

행정기관 - 사업장 간 협업 노력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 * 처분 위주 →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포인트 축적 노력 유도
- 잠재적 화학사고 원인인자 제거
 - * 전문조직.전문인력.시설개선.안전교육.사고예방.공동대응 → 사고 저감 유도

2

기업의 안전관리 능력 증대

- 대표자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향상으로 안전분야투자 및 관리 증대 → 안전의식 정립
- 환경안전관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극대화
 - * 현장의 안전의식 및 관리능력 극대화 계기

3

자율안전관리 활동으로 화학사고 발생 저감

- 취급 사업장간 자율점검·정비, 상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선제적 사고예방
- 사고 발생시 공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V. 자진신고 안내**]

자진신고 안내



신고 기간 2017. 11. 22. ~ 2018. 5. 18(6개월)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위반 사업자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진신고 안내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 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신고혜택

-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 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더 맑게
더 푸르게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